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. 10. 22 선고 2018가단5184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 문중

피 고 B

변 론 종결 2019. 9. 24

판 결 선고 2019. 10. 22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, 강원도 강릉시 C 대 688㎡를 인도하며,나. 2004. 2. 20.부터 가항 기재 토지 인도일까지 연 4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5분의 1은 원고가,5분의 4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04. 2. 20.부터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토지 인도일까지 월 5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원고 소유인 강원도 강릉시 C 대 688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 위에 건축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1이 사건 건물*이라 한다)의 소유권을 피고가 2004. 2. 20.임의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사실,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 부지 부분의 차임 상당 금액이 연 4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,2, 3, 5, 7호증(각 가지번호 생략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와 갑 제4, 6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건물 부지 부분의 차임 상당 금액이 연 40만 원을 초과한 월 5만 원이라고 주장하나,갑 제6,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위 사실관계에 따르면,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지 않는 한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,2004. 2. 20.부터 위 인도일까지 연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 원고의 주장은 이러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.

2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피고가 민법 제644조,제283조에서 정하는 매수청구권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,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11조 본문,제21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이규영

별지